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305-341
<https://doi.org/10.29212/mh.2020.117.3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고찰

김정기*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접근
3. 유엔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잠정합의 과정
4. 국회 동의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갈등 해소
5. 결론

1. 서론

한국은 1995년 2월 유엔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10월에 유엔 앙골라검증임무단(UNAVEM III: United Natio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의 일원으로 ‘앙골라 PKO 공병부대’¹⁾ 제1진을 파병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담당관(정치학박사)

1) 1995년 8월 7일 창설 당시 부대의 고유명칭은 제101야전공병대대, 통상명칭은 육군6767부대였으며 부대 애칭은 무지개부대, 오작교부대 등으로 검토되다 부

였다. 제2진이 다음 해인 1996년 4월에 전개하였고, 이어 제3진이 그해 10월에 교대한 후 약 2개월만인 12월에 철수하였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 군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보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목적으로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을 위해 다른 나라에 군부대를 파병하게 되었다. 한국도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여러 나라에 PKO를 위한 부대를 파병하였고, 지금도 레바논에서 동명부대가, 남수단에는 한빛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PKO 부대 파병은 ‘국제평화에 기여’라는 국군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나라에 파병을 하든지 그 지향하는 바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PKO 부대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앙골라 파병은 국내외적으로 소말리아 파병의 후유증²⁾이 채 가시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이고, 유엔이 최초로 요청한 지뢰제거를 중심으로 한 전투공병 부대 파병을 거부하고 교량 복구를 주 임무로 하는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한 특징이 있다. 게다가 국회 동의로 파병이 결정된 후 임무지역 선정에 대해 유엔과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해결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여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파병되었던 공병부대로서 일반적으로는 ‘앙골라 PKO 공병부대’로 칭한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파견관련 사료 III』, 1995, p. 506.

- 2) 1993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Mogadishu) 시가전에서 미군 헬리콥터 블랙호크가 추락하여 부상자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줄에 묶여 끌려다니는 장면이 CNN과 AP통신에서 전파를 탔으며, 그 직후 여론 악화로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하였고, 한국군 소말리아 상륙수부대도 1994년 3월 급하게 철수하는 후유증을 겪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륙수부대 파병사』, 2012, pp. 171-173.

따라서 한국이 왜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앙골라에 교량복구 건설을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고, 파병과정에서 임무지역 선정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였을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앙골라에 한국군 PKO 공병부대가 파병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도 이 파병사례에 대한 정책적 결정과정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없었다는 점도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이 앙골라 파병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과정, 즉 유엔과의 잠정합의와 국회 동의 확보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빚은 갈등의 해소를 고찰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위 질문의 답을 찾아 사실의 전후 맥락과 주요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PKO 파병정책의 결정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오류를 예방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파병사례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범위는 시간상으로 앙골라 파병 논의가 시작된 1995년 2월부터 제1진이 전개되는 10월까지로 설정하였다. 공간적으로는 한국과 유엔, 그리고 앙골라이며 당시 파병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한 기관들인 한국의 당시 외무부, 국방부, 대통령(청와대) 및 국회와 유엔의 사무국, 앙골라 현지 임무단, 사무총장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행위자로 포함하였다.

연구는 먼저 2장에서 기존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선행하여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고찰하는 데 필요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3장에서는 한국과 유엔의 파병에 대한 잠정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국회 동의 과정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유엔과의 갈등해소 문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접근

가. 기존 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국의 앙골라 파병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위를 넓혀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PKO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후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부침을 조명한 초기 연구가³⁾ 있었다. 이어 2000년대에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이 10여 년 전개되면서 이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⁴⁾이 이어졌다. 과거를 조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의 연구는 정부 예산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고 비교적 연구 산물도 많았다. 이런 연구 경향은 2019년부터 평화유지활동이 평화활동

3) 김열수, “UN 평화유지 활동의 부침: 구조적 원인과 행태적 원인,”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1호, 1999, pp. 435-454;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서울: 오름, 2000.

4)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 안보와 유엔체제』, 서울: 집문당, 2003; 고성윤·부형욱, “신속 파병을 위한 시스템 발전방안: 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 『국방연구』 제53권 제3호, 2010, pp. 71-95;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PO)의 국익증진 효과,” 『국가전략』 제17권 제2호, 2011, pp. 33-68; 황진한·김건우, “21세기 한국군의 PKO 전략 연구: 군사력의 소프트 파워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68권 제3호, 2012, pp. 99-127; 이신화, “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양분화 고찰: 유엔 PKO vs. 다국적군 파병,” 『아세아연구』 제56권 제2호(2013), pp. 188-225; 박순향, “유엔 평화활동 분석과 한국 평화활동의 방향,” 『군사』 제90호, 2014, pp. 181-219; Lee Shinwha, “Does Helmet Color Matter?: Discrepancy in Korea’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8, No. 3, 2014, pp. 51-73.

(PO: Peace Operation)으로 포함된 후에도 PKO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⁵⁾ 그러나 구체적 사례나 분야별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채 비슷한 요지의 내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동안 부족했던 전문분야를 한층 더 미시적으로 분석하거나⁶⁾ 거시적으로 민주화 등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을 탐구하고⁷⁾ 거버넌스 속에서 평화 공공외교 등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⁸⁾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유엔 PKO 활동 연구의 미시적, 거시적 분야를 개척하면서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는 PKO 정책 결정에서 국가 또는 유엔 등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구체적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미시적으로도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을 답습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연구가 미진했던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유엔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밀도 있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과의 협의와 국내 비준 과정 및 파병 결정 후 조치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책 결정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5) Kyudok Hong, "South Korea' Future Strategies for Better Peace Op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No. 1, 2019, pp. 21-42 등.
- 6) 박순향, "PKO-C34를 통해 본 한국 평화활동의 발전 방안," 『전략연구』 제24권 제1호, 2017, pp. 145-178; 박순향,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4호, 2019, pp. 39-71.
- 7) Jai Kwan Jung, "Mission Impossible? Negotiated Settlement, UN PKO, and Post-Civil War Democracy Building,"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1, 2017, pp. 151-173.
- 8) 이신화,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 『OUGHTOPIA』 제34권 제1호, 2019, pp. 7-42; 박홍순·조환승·정우탁 편, 『유엔과 세계평화』, APCEIU, 2013; 정은숙, 『국제질서의 변화와 유엔의 평화·안보 거버넌스』, 서울: 선인, 2019.

나. 이론적 접근

그동안 한국의 PKO 연구 경향은 정책 결정보다는 그 활동의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론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PKO를 포함하여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 대한 해외파병정책 결정을 다룬 논문에서 그 이론들이 간간히 소개되었다. 처음에는 여러 개의 정책결정 이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연구 분석 틀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다가⁹⁾ 점차 특정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논의를 집중하는¹⁰⁾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이 다룬 정책 결정이론으로는 로즈노(James N. Roesnau)의 예비이론(Pre-theory)과 엘리슨(Graham T. Allison)의 세 가지 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조직행태 모델(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정부정치 모델(Governmental politics model) 등이 있고, 위트코프(Eugene Wittkopf)의 깔때기(Funnel) 이론과 푸트남(Robert D.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s) 이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을 유엔 PKO 파병정책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차

9) 유병선, “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전, 걸프전, PKO 파병 사례 분석,”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2, pp. 14-29; 정도생,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0-25; 김열수, “해외파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 『전략연구』 제13권 제1호, 2006, pp. 126-133; 김정두, “한국 군사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해외파병 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1, pp. 31-44.

10) 나용하, “양면게임 이론에 입각한 파병 정책 결정 연구: 이라크 파병 협상의 윈셋(win-set)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0집 제1권, 2014, pp. 29-49; 이상욱, “한국 해외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5, pp. 16-32;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서울: 선인, 2016, pp. 34-43.

원에서 평가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로즈노의 예비이론은 주요 독립변수로서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장점으로 는 PKO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국가, 체제별 변수가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¹¹⁾, 반면에 그 다섯 가지 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단점을 지닌다. 앨리슨의 합리적 선택, 조직행태 및 정부정치 모델은 사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점은 PKO 파병에 대한 국내적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나 단점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과의 협의 등 정책 결정과정을 동시에 설명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¹²⁾ 위트코프의 깔때기 이론은 투입과 산출의 반복과 환류 시스템을 중요하게 다룬다.¹³⁾ 장점으로 반복적 협의를 거치는 유엔 PKO 파병정책 결정과정과 결과를 추론하는데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변수의 선별과 포착이 어려워 환류(feedback)와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예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푸트남의 양면 게임이론은 국가 간 1수준(level-1) 게임으로 도출되는 잠정합의와 그 잠정합의에 대한 내부적 비준 과정인 2수준(level-2) 게임을 연계하여 중요하게 다룬다. 그리고 윈셋(Win-set)이라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부적 비준을 얻을 수

11)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of Foreign Policy*, The Free Press, 1971, p. 113을 이상욱, 앞의 논문, pp. 31에서 재인용.

12)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ed, Addison Wesley Longman, 1999, pp. 401-405.

13)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 and Process* 4th ed, St. Martin's Press, 1991, p. 13을 김정두, 앞의 논문, p. 39에서 재인용.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 개념을 활용하여 양자 간 협상과 양면 게임에서 오는 연계 현상을 동시에 설명한다.¹⁴⁾ 따라서 이 이론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정치와 국제적 협상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원셋을 활용하여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PKO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공여국은 국회의 동의를 이유로 유엔과 협의에서 원셋 범위를 줄이려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양면 게임 적용이 유용하다. 즉, 원셋을 수단으로 1수준 게임의 잠정합의와 2수준 게임인 내부적 비준을 얻는 정책 결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1수준 게임이 국가 간이 아닌 공여국과 유엔 간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력 공여국(供與國)은 자국 부대의 안전을 국익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엔은 임무단이 수행하는 위임명령이 최우선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1, 2수준 게임은 상당한 시간 속에서 여러 행위자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원셋은 물론이고 행위자의 역할에 따른 양상과 주요 행위자의 선호(Preference)와 영향력 및 내·외부 행위자간 협력과 갈등해소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이 동반되어야 신뢰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로즈노의 예비이론, 엘리스의 세 가지 모델 및 위트코프의 갈때기 이론 등이 주는 장점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4) 푸트남은 '다른 것들은 동일(ceteris paribus)'하다는 조건으로 규칙을 정해 1차 국가간 잠정합의, 2차 국내 지지 확보라는 양면게임을 설정하여 '원셋이 클수록 1차 합의가 용이하며, 2차 지지 확보가 가능한 원셋의 범위가 국제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도출함,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35-437; 원셋의 개념 설명은 김열수, 앞의 논문, 2006, pp. 131-132 참조.

다. 연구 방법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에서 1수준 게임의 행위자는 한국(외무부)과 유엔(사무국)이며, 2수준 행위자는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이다. 그리고 윈셋은 전술한 것과 같이 내부적 기준을 얻을 수 있는, 즉 국제적 합의를 국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의 조합이다. 특히 윈셋은 내부적 기준을 얻기 위해 핵심적으로 확보할 기준과 유엔과 협력을 위해 양보 가능한 융통성의 범위도 가져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사전 연구를 통해 한국과 유엔의 협의에 윈셋으로 작용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한국은 다른 병력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부대를 파병할 때 안전(Security)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윈셋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¹⁵⁾ 반면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임무단의 위임명령(Mandates)이 모든 활동에 우선한다는 점에서 위임명령을 윈셋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¹⁶⁾ 즉, 한국의 윈셋에서 핵심적 확보 기준은 ㉠ 파병부대의 안전이며, 이를 위한 융통성의 범위는 ㉡ 비(非)전투부대 파병으로부터 ㉢ 비(非)지뢰제거작전 수행으로 상정¹⁷⁾할 수 있다. 한편, 유엔의 윈셋은 임무단에 부여한 위임명령이 되며 그 중요도에 따라

15) 이신화, 앞의 논문, p. 213; 전제국 앞의 논문, p. 48; 유엔도 2008년 브라히미(Brahim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공여국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다. Haidi Willmot, Scott Sheeran, and Lisa Sharland, *Safety and Security Challenges*,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2015, pp. 7-12.

16) 임무단의 위임명령과 병력공여국의 효율성 및 당사국의 만족도에 기반하여 PKO 활동을 평가한 박순향, 앞의 논문, 2019, pp. 54-61 참조.

17) 앙골라 파병결정 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연구 편찬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의 PKO파병사』, 2007, p. 111; 육군본부, 『해외파병 40년사』, 2008, pp. 416-417.

까지 고려하여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실선으로 표시한 한국의 파병정책 결정과정에 집중하여 1수준 게임은 한국(외무부)와 유엔(사무국)을 핵심 행위자로 다루었고, 2수준 게임은 국회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유엔의 2수준 게임과 행위자의 역할은 논외로 하였으나, 유엔의 현지 임무단은 파병 실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방부와 함께 1수준 게임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일종의 잠정 가설로 논리적 전개에 줄거리를 구상하였다. “앙골라에 파병을 결정하는 2수준 게임(내부적 지지 확보)을 위해 1수준 게임(잠정합의)에서 윈셋 범위를 줄이는 속성으로 유엔이 한국에 최초 ㉠을 요청하자 한국은 파병은 수용하되 ㉡를 주장한다. 이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를 활용하여 ㉣의 확보를 추구한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국회 동의를 위한 2수준 게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며 국회 동의 후 후속 조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잠정 가설을 검증해가는 논증 자료는 앙골라 파병정책의 결정과정과 관련된 수집된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조적 수단인 로즈노의 예비이론, 앨리슨의 세 가지 모델, 위트코프의 갈때기 이론의 장점들도 행위자의 선호와 영향력, 내부 행위자간 경쟁과 협력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즉, 당시 여당 총재인 한국의 대통령은 최상위 정책 결정 행위자라는 점에서 그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과, 절차를 중시하는 조직행태 및 정부 부처의 이견조정과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갈때기(수렴) 현상도 주목하였다.

3. 유엔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잠정합의 과정

가. 유엔의 파병 요청

1975년 시작된 앙골라분쟁은 탈냉전 이후 해결되어가는 듯했다. 반군 UNITA를 지원하던 미국은 1993년 앙골라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후 행정명령(제12,865호)으로 UNITA를 ‘미국의 위협’으로 지목하였다.²¹⁾ 유엔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64호를 통해 UNITA에 제재를 강화한 후 최후통첩으로 UNITA에 정전협정 참여를 압박하였다.²²⁾ 1994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델라(Nelson Mandela)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UNITA를 지원하던 백인 분리주의(Apartheid) 정부를 종식시켰다. 미국과 남아공으로부터 지원이 끊기게 된 UNITA는 1994년 11월 20일 루사카 평화협정(Lusaka Protocol)²³⁾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 실시했으나 UNITA의 불복과 결선투표 불참으로 미완(未完) 상태인 총선거의 완료, 군과 경찰의 통합 및 권력 배분에 의한 통합정부의 수립이 추진되었다.²⁴⁾ 이를

21) George Wright, *The Destruction of a Natio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Angola Since 1945*, London: Pluto Press, 1997, pp. 175-178; “Angolan Civil War,” <https://en.wikipedia.org>, 검색일: 2020. 7. 20.

2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64*, September 15, 1993.

23) 루사카는 앙골라 동쪽에 인접한 잠비아의 수도로서 당시 베예(Alioune Blondin Beye)가 유엔의 대표로 양자협상을 중재하였으며 1994년 11월 22일부터 전면 휴전, UNITA군 해체 및 앙골라군에 편입, UNITA측에 부통령직과 11개의 장·차관, 7개의 공관장 등 주요직위 할당, 대통령 결선투표 실시 등을 합의함. Esref Aksu, *The United Nations, intra-state peacekeeping and normative chan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pp. 166-167.

24) 김정기, “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제35집 제4권, 2019, pp. 84-86.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은 1995년 2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76호를 채택하고 UNAVEM II를 확대하여 UNAVEM III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최대 7,000명의 군 병력과 군 옵서버 350명, 경찰 옵서버 260명을 편성토록 하였다.²⁵⁾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에도 공병부대의 파병을 요청하게 된다.

UNAVEM III 창설을 결의한 다음 날인 1995년 2월 9일에 뉴욕의 유엔본부 평화유지활동 사무국(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은 전문을 보내 한국의 UNAVEM III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다. 실무자가 작성하여 사무차장을 대신한 군사고문단장 명의로 보낸 전문에서 지뢰제거, 정찰, 전술 교량 가설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200명 규모의 공병부대 파병 의향을 문의하였다. 비공식적인 파병 요청이지만 한국에 지뢰제거 임무를 포함한 독립공병부대의 파견에 관한 입장을 문의한 것으로²⁶⁾ 유엔의 원샷 ©광범위한 지뢰제거체계 구축 참여를 타진한 것이다. 외무부는 파병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나. 파병에 대한 이견과 절충

앙골라에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초기에 이를 찬성하는 외무부 대(對) 반대하는 국방부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외무부에서 유엔의 전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검토를 요

2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76*.

26) 그 내용은 “the Secretariat would like to make an informal inquiry as to wheth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in a position to contribute an independent engineer squadron/company would have to be deployed to Angola by the end of March 1995”로 되어 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 파견 관련 사료 I』, 1995, pp. 21-26.

청한 것은 2월 23일이었는데, 이때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 및 국가 위상 제고 방침에 비추어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동시에 유엔이 보낸 전문을 첨부하여 적극적인(긍정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2월 25일 유엔이 보낸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부대 성격, 시기, 절차 등을 고려 시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즉, 지뢰제거는 전투공병 과업으로서, 이는 안전 위해요소가 다대(多大)하며 게다가 3월 말까지 현지에 전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도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²⁷⁾

3월 3일의 2차 보고에서도 외무부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안보 및 안전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파견은 부적절한 것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①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전투공병은 안전위해 요소가 다대하고 ② 전투공병 인원 차출 시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③ 장비준비와 경계부대 편성도 부담이 되며 ④ 3월 말 현지 전개는 절차를 고려 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앙골라 파병을 전제한 현지조사에 참여하면 거절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견’으로 3월 4일 외무부에 통보하였다.²⁸⁾

이때 문서로 보서는 파병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의지가 확고한 듯 보였다. 그러나 외무부는 청와대와 교감 하에 강한 파병 의지를 보인 바,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만약 파병이 되더라도 미국의 소말리아 모가디슈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사전

27)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 39.

28)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p. 41-43.

예방할 필요성이 있었다. 가장 전투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 국방부이지만 전쟁이 아닌 경우 위험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한 성과보다는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조직행태 특성을 보인 것이다. 파병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에서 요청한 지뢰제거 임무를 포함한 전투공병 파병은 불가하고 따라서 현지조사도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갔다.

그런데 국방부는 2주 뒤인 3월 17일에 ‘범국가적 노력으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을 위해 PKO 파병 필요성’이 있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함께 위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①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전투공병보다 비전투부대인 건설공병(130명 규모)을 파견하되, 7월 이후가 적절하며 ② 4~5명의 군 읍서버 파견을 선 추진하고 ③ 유엔에는 현지조사 후 협의하자고 외무부에 통보하였다.²⁹⁾ 2주만에 국방부 내부에서 이러한 반전이 나온 배경은 최초 의견 통보 시 외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적극 참여’ 의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3월 2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의 유럽 해외 순방에 외무장관과 함께 수행한 합동참모본부의장³⁰⁾이 수행과정에서 대통령의 파병 의지를 확인하였고³¹⁾ 복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 외무부의 요청에 동의하는 추가 검토 공문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파병을 전제로 하는 현지조사단 파견 추진을 결정하고, 3월 22일 국방부에 현지조사단 명단을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한국의 앙골라 파병은 외무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

29)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44-45.

30)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사(1995년도사)』, 1997, pp. 690-692.

31) 6월 26일 정책회의에서 ‘대통령 유럽순방에서 논의’된 사실이 공지됨.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 107.

는 점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국방부가 이를 확인하면서 동의한 것이다. 일종의 국익차원의 합리적 선택과 정부정치 과정이 작용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파병 시 부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투부대의 파병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유엔이 제시한 원셋 ㉔ 광범위한 지뢰제거체계 구축에 참여할 경우 안전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와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를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㉕ 비지뢰제거 작전 수행을 주장하면서 유엔으로부터 ㉔에 대해서는 양보를 받되, 대신 ㉖ 파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㉗ 비전투부대 파병으로 절충할 것을 외무부에 통보한 것이다.

다. 유엔과 잠정합의

한국은 유엔의 요청에 대해 전투부대가 아닌 건설공병 파병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외무부와 국방부 인원이 합동으로 편성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청와대 행정관과 파병할 제1진 단장 등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앙골라 현지와 유엔본부 DPKO를 방문하였다.³²⁾ 4월 12일에는 루안다 현지에 도착하여 유엔앙골라검증임무단의 베예(Alioune Beye) 유엔특사(SRSG: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를 면담하였다. 이후 루방고(Lubango) 소재 지역사령부와 나미베(Namibe)항을 방문하였으며 앙골라 정부 기관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루안다 시내 등을 정찰하였다.

32) 이하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46-74;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파견관련 사료 II』, 1995, pp. 313-385.

4월 17일부터는 뉴욕으로 이동하여 유엔본부 DPKO를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당일에는 사무차장보와 앙골라임무단 기획담당을 만났고, 다음날인 4월 18일에 사무차장(Kofi Annan)과 앙골라임무단 군사담당관(Mulkowski) 등을 면담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³³⁾ 귀국 후 4월 25일 국방부 장관에게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현지 유엔 임무단(UNAVEM III)은 지뢰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유엔본부 DPKO는 한국의 참여 자체를 중시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지뢰제거를 수반하지 않는 교량 또는 수용소 건설 임무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병 부대의 파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4월 28일 외무부에 통보한 공문에서 교량 건설 및 보수공사 등을 임무로 하는 200여 명의 공병부대 파견이 가능하며, 최소 4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① 지뢰가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임무가 가능하므로 유엔의 사전 조치가 요구되며 ② 자재 및 물자는 유엔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③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UNAVEM III에 한국군 영관급 참모장교 파견을 요구하였다.³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방부의 앙골라 파병에 대한 최종 의견은 지뢰제거 외 교량 건설 및 보수를 주 임무로 하는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지뢰제거 외 교량복구 건설을 주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 파병을 기본사항으로 외무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5월 4일에는 PKO 업무와 관련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및 연합사의 담당관 12명이 참석한 실무협조 회의를 하였고 앙골라 파병에 대

33)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 380.

34)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75-76.

비한 부대편성 안, 장비 및 물자 소요, 예산 판단 등을 점검하였다. 외무부는 5월 12일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6월 13일 유엔 사무국은 한국이 제안한 교량 건설 공병부대의 파병을 앙골라와 협의하였으며 동의한다고 알려졌다.³⁵⁾ 결국 유엔의 최초 요청인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한 전투공병 부대 파병을 거부한 한국의 역제안은 외무부를 거쳐 유엔 사무국에 통보되었으며 유엔 사무국은 이를 존중한다고 의견을 보내왔으므로 1수준 게임, 즉 한국과 유엔의 잠정합의가 타결된 것이다.

1수준 게임과정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국방부가 파병 여부를 검토할 때 이미 원셋의 확보기준인 ㉠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 비전투부대 파병이라는 절충안을 외무부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무부, 국방부가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한 후 ㉢ 비지뢰 제거작전 수행을 유엔에 계속 요구하여 ㉣를 양보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편 유엔은 1수준 게임 과정에서 최초에는 원셋 ㉢ 광범위한 지뢰제거체계 구축 참여를 위해 한국이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의 파병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거부하자 유엔은 한국이 제시한 공병부대 편성이면 ㉤ 앙골라 평화회복 및 국가통합 지원을 위해 최소한 ㉥ UNITA군 수용소 설치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용한 것이다.³⁶⁾ 그리고 ㉢에 대해서는 강요는 하지 않되 대신 부대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자체 지뢰탐지 및 제거능력은 보유

35)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p. 131-138.

36) 실제로 한국군 공병부대는 UNITA군 수용소 건설에 많은 공병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였다. 제1진의 경우 응고베(N'gove) 수용소 건설('96.1.2, 2.2, 2.17~21, 3.4, 3.17~4.10) 및 병력수송('96.2.5~10), 빌라노바(Vila Nova) 수용소 병력수송('96.2.1~10), 치템보(Chitembo) 수용소 부지정리('96.3.27~4.10) 등을 실시하였다. 앙골라 PKO 공병대대, 『PKO 업무지침서』, 1996, p. 8-104-32.

하도록 하였다.³⁷⁾ 결국, 유엔은 위임명령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양보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부 부처 및 유엔과의 갈등과 협력을 거쳐 1수준 게임인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제 한국은 파병을 위한 최종관문인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는 2수준 게임, 국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게 되었다.

4. 국회 동의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갈등 해소

가. 대통령 재가

한국은 외무부가 국방부와 협조하여 유엔과 잠정합의한 파병안에 대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파병 결정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며 정부 예산 운영을 감독하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기관이다.³⁸⁾ 그래서 파병에 대한 2수준 게임인 국내적 지지는 국회 동의로 결정된다.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37) 잠정합의 직후 마련한 파병부대 편성(안)에 지뢰탐지기 10대, 폭파기구세트 4대가 반영되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 96.

38) 헌법 제 60조 ②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다. 국회의 파병동의를 2010년 1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4월에 시행되면서 법률에도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법률 제13123호로 2015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로 동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6월 1일.

의결을 위해서는 차관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그전에 파병 실무부처인 국방부의 정책회의와 통일안보 조정회의를 거쳐야 했다.

한국 외무부가 유엔 사무국과 건설 공병부대의 앙골라 파병을 잠정합의한 6월 13일 이후 국방부는 6월 20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파견 가능한 부대 규모 및 능력을 세부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리고 6월 26일 국방부는 정책회의를 통해 장간조립교 건설 1개 중대를 기본으로 각종 공병 장비를 편제한 198명의 공병부대를 1년 파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³⁹⁾ 이어 7월 1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안보 조정회의에서 외무부가 제안한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외무부는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진출 기반조성, 국군의 현대화 및 국제화라는 기대효과를 들어 200명 수준의 교량건설 및 보수를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를 1년 기간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예산은 1995년 1차 연도 소요 예산 127억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며, 1996년부터 연간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7월 3일에는 외무부가 앙골라 파견 시기(국회 동의 후 3개월), 파견 인원(198명) 및 부대편성, 주요 장비 목록을 유엔에 통보하였다. 7월 5일부터 10일에는 국회 국방위원들과 통일외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설명 및 협의를 진행하면서 7월 6일 차관회의 의결 후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⁴⁰⁾ 그리고

39) 당시 작전참모부장은 위험담이 크고, 공병부대의 전투교훈 습득은 제한되며, 파견준비에 많은 소요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하였으나 보고자로 참석한 정책기획관이 대통령 유럽순방 때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차관이 PKO 적극 참여는 국가방침이란 점을 들어 군은 내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짓고 의결하였다. “제8회 정책회의(’95. 6. 26),”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98-107.

40) 외무부, “국무회의 의안처리전 제424호(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안),” 1995.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자료 1>과 같이 7월 11일 대통령이 재가하였다. 약 200명 규모의 건설공병 부대를 1년간 파견하며 ‘앙골라 평화유지단의 활동 지원을 위한 교량 건설 및 보수 임무 수행’이라고 파견목적을 명시하였다.

<자료 1> 앙골라 파병 대통령 재가 문서(41)

문서번호	유엔정 23210-	(전화 : 720-2334)	대통령
보 존 기 간	영구, 준영구 10. 6. 3. 1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보 존 기 간			
시행일자	1995. 6. 30.		
원조기관	국방부장관		
수신	건설의	발신	통제
제 목	앙골라 및 서부사하라 평화유지활동 참여		
1. 유엔은 「앙골라 평화유지단」(UNAVEM III)에 우리 공병부대의 파견을 요청하며 왔으며 또한 94.9월부터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MINURSO)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료지원단의 파견 연장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입장하에 아테와 같이 우리부대의 파견 및 연장을 추진코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앙골라 평화유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 약 200명 규모의 건설공병부대를 1년간 파견 ○ 소요경비 : 약 150억원 추산 (유엔규정에 의해 추후 보전) 			
○ 파견목적 : 앙골라 평화유지단의 활동지원을 위한 교량 건설 및 보수 임무 수행			
○ 앙골라 평화유지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골라 정부군 및 반군간의 휴전감시, 인도적 구호활동 및 국가재건 지원 - 약 30여개국으로부터 7천여명의 인원 참여 계획 나.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 94.9-95.8 파견된 우리 의료지원단(42명)의 파견기간 1년 연장 ○ 소요경비 : 약 17억원 추산 (유엔규정에 의해 추후 보전) ○ 파견목적 :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의 활동지원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 ○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서부사하라 해방전선)간 휴전감시 및 서부사하라 귀속문제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지원 - 95.6월 현재 25개국 288명 참여 2. 본건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후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 예정입니다. 끝.			

6월 13일 한국과 유엔이 잠정합의에 도달한 후 약 한 달만에 대통령이 재가하였다. 이는 유엔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국내적 지지 즉, 국회 동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파병을 앞당기려는 조치였다. 대통령이 재가를 결정한 요인은 파병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에서 조기에 안전을 확보한 윈셋 설정으로 외무부와 유엔 사무국 간에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적 목적에 부합한 합리적

41)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136-137.

선택이며, 절차적으로도 국방부의 정책회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모든 절차적 요건들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했다.

외교적 목적 부합, 안전 확보 및 실무부처의 정책회의를 바탕으로 통일안보 조정회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중시하는 정부 조직행태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유럽순방 중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적 포석으로 앙골라 파병 의지를 피력한 대통령 개인의 역할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나. 국회 파병동의안 의결

대통령이 재가한 다음 날인 7월 12일 외무부는 바로 국회에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제안 이유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군 공병부대를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UNAVEM III)에 파견코자 함’이었다. 참여동의안은 8개 항으로 임무는 교량건설 및 보수로 명시하고 주둔 위치는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하되 부대 안전 및 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⁴²⁾

42) 8개 항은 ㉠ 공병부대는 유엔측 요청에 따라 1개 대대 규모(200명)로 편성 운용예정임 ㉡ 공병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함(추후 유엔측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문제 검토 가능) ㉢ 공병부대의 임무는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활동에 필요한 교량건설 및 보수임 ㉣ 공병부대가 앙골라 내에서 주둔할 위치는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하되 부대안전 및 지원효율성을 고려함 ㉤ 부대시설·장비, 보급 및 물자지원은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함 ㉥ 파견일자는 국회 동의 획득 후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함 ㉦ 파견부대 및 요원의 지휘권,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 ㉧ 파견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에서 보전 받을 예정임, 이하

7월 12일 제출된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은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과 함께 다음날인 13일에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 10시 22분에 개의하여 10시 32분에 외무부장관(공로명)이 설명한 후 전문위원(강희복)의 검토보고가 이어진 후 토의에 들어갔다. 정재문(민자당), 이종찬(민주당), 안무혁(민자당), 박구일(자민련), 정몽준(무소속), 이부영(민주당), 류홍수(민자당), 임채정(민주당), 구창림(민자당) 의원 순으로 이어진 질의에서 국익 차원의 실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안전보장이 사회 진출에 들며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후 회의는 11시 17분에 중단된 후 11시 37분에 속개되었지만 기타 현안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설명과 답변만 있었으며 앙골라 파병 동의안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설명을 받기로 하였다.⁴³⁾

그리고 7월 14일 제2차 회의가 9시 21분에 개의되어 외무부장관이 제1차 회의에서 지적받은 PKO 파견동의안을 서두른다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였다. 2월부터 유엔의 요청에 따라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파악한 결과 현지 정세도 호전되어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추천 및 지지를 받는 것도 그동안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등의 PKO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타 중견 국가들의 파병 규모와 비교해가면서 한국이 앙골라에 파병해도 총 평화유지군 파병은 250명 규모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첨언하였다.

동의안 및 1일차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1995. 7. 13.을 참조.

43) 2일차 회의는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계속),” 1995. 7. 14.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안보 요소, 군사적 실리, 편성 및 안전문제 등 군사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였다. 후방지역의 공병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안보에 지장이 없으며, 다양한 해외 군사작전을 체험함으로써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편성과 특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지뢰제거 인력 및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되, 교량복구를 중심으로 한 부대로 편성하고 사전 지뢰제거가 확인된 지역에서만 교량을 건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의결 직전 임채정 의원이 앞으로는 해외파병 시 국익과 안전문제 등에 관한 현지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현지조사를 한 후 의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위원장(오세웅)이 다른 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 동의 1차 관문인 통일외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는 2수준 게임은 1수준 게임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무부의 이견이 정리된 만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파병동의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제동을 거느냐 동의하느냐의 문제였다. 해당 통일외무위원회에서 1일차에 국익차원 추가설명을 요구했지만 2일차에 안전 확보 등 국방부의 설명에 힘입어 수정 없이 파병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15일 토요일 13시 12분에 개의원 제176회 국회 본회의로 넘어온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은 29개의 안건 중 마지막인 29번째로 처리되었다. 국회부의장(이한동)이 상정하고 통일외무위원장대리(유홍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되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부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15시 20분에 곧바로 산회되었다.⁴⁴⁾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으로써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국내적 지지를 결정하는 국회 동의라는 2수준 게임을 정리해 보면, 정부와 국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대해 통일외무위원회에서 논쟁을 거쳤다. 첫째는 파병 목적이고, 둘째는 안전문제였다. 파병 목적은 정부가 제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중견 국가로서 위상에 맞는 PKO 기여에 국회가 동의하였고, 부가적으로 설명한 해외 군사적전을 통한 경험축적과 인력 양성도 수공하였다. 안전문제는 동의안에 파병부대의 임무가 명시되었고, 주둔 위치도 부대안전 및 지원효율성을 고려 유엔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포함되었다. 의결과정에서도 현지조사 결과 양골라 분쟁상황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설명되었으나, 국회도 현지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통일외무위원회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지와 국민의 생명에 위해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본회의를 통해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동의안이 수정 없이 통과된 것은 해당 정부부처인 국방부와 외무부가 사전에 국회 동의를 고려하여 건설공병 파병으로 유엔과 잠정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여 동의안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도⁴⁵⁾ 동의안이 수정 없이 통과하는데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44)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군 공병부대의 ‘양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1995. 7. 15.

45)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141-174.

이는 양면 게임이론의 2수준 게임, 즉 내부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를 행정부가 어떻게 설득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1수준 게임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감안한 교량건설 공병부대 파병 협의가 결정적으로 안전 논리를 뒷받침한 것이다. 다만, 동의안에 부대주둔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 유엔과 협의한다고 한 것은 이후 유엔과 갈등이 불거지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익차원 종합적 설명과 안전문제에 관한 국회의 현지조사 참여 요구는 합리적 선택과 예비이론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갈등 해소

앙골라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결됨에 따라 그 결과는 외무부에서 유엔으로 통보되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파병될 부대를 창설하면서, 현지에 협조단을 파견하여 파병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였다.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등 7명이 현지협조단으로 활동하면서 전개 일정과 지휘관계 및 임무지역 등을 협조하였다.⁴⁶⁾ 이때 한국 현지협조단은 활동과정에서 현지 경찰결과를 토대로 중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도 루안다와 근접해 있어 현지 한국 수산업체인 인터불고와의 협력도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북부지역으로 임무지정과 그 중심지인 말란제(Malanje) 인근에 배치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였다.⁴⁷⁾ 이는 국회 동의안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

46)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I, pp. 386-434.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대한민국 공병부대 증언록』, 2019, pp. 48-49.

하여 유엔과 주둔 위치를 협의한다는 조항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었다.

그러나 UNAVEM III에서는 중부지역의 교량복구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우암보(Huambo) 배치를 검토 중이며, PKO에 대한 사항은 임무단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지협조단장은 북부지역 주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재차 강하게 전달한 후 귀국길에 올랐으나 북부지역을 요구한 시점이 국회동의 이후, 즉 2수준 게임이 종료된 상태라 유엔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이미 8월 7일에는 파병될 앙골라 PKO 공병부대가 창설되었으며, 8월 8일에 유엔 사무총장은 형식적 절차로서 공식서한을 한국에 보내 교량건설 공병부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서한에서도 한국이 요청한 북부지역으로 임무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후에도 한국은 몇 차례 더 외교경로를 통해 유엔 사무국에 북부지역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 반응은 마찬가지였다.⁴⁸⁾ 결국 유엔은 최초 임무지역을 과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량복구 소요가 많은 중부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즉, 최초 우암보에 배치하고, 차후 UNAVEM III 군사령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9월 7일 이를 한국에 통보하였다.⁴⁹⁾ 당시 앙골라 반군인 UNITA의 주요 활동지역이 우암보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이었고 UNITA군을 수용할 QA의 건설 소요도 많았다. 이를 위해서도 중부지역의 파괴된 교량복구가 가장 긴급했고 그 주변에는 지뢰도 산재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유엔의 임무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절충한 입장을 수용, 최초 임무지역만 중부 우암보로 지정하고 차후는 UNAVEM III 군사령관의

48) 8월 22일과 9월 2일 북부지역 임무부여와 말란제 인근 돈도(Dondo) 배치를 재차 요청함.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 p. 293, 295.

49)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 p. 299.

지시에 따를 것을 반영한 지령을 9월 18일 하달할 수밖에 없었다.⁵⁰⁾ 그리고 앙골라 파병부대 제1진이 10월 5일 전개하면서 부대 차원에서 임무를 북부지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변경은 불가능하였다.

유엔은 1수준 게임에서는 원셋 ㉠(지뢰제거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의 불참 의견에 반대는 하지 않았으나, 부대편성 협의에서 자연스럽게 제한적이지만 지뢰탐지 및 제거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2수준 게임 이후에는 지뢰 제거가 필수적인 지역으로 한국군 공병부대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의 원셋 ㉡ 비지뢰제거작전 수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을 고수하였다. 내전 당시 중부 우암보 일대는 UNITA가 철수하면서 교량을 파괴하고, 그 주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한 지역으로 한국은 교량복구 임무수행을 위해 ㉡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우암보 현지에 파병된 후 한국군 공병부대는 파괴된 교량을 복구하면서 현저한 위험 지역은 지뢰제거 전문부대 또는 민간회사의 지원을 받았지만, 다수의 경우는 제한된 자체 능력으로 공사지역과 숙영지 일대에 대한 지뢰를 탐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⁵¹⁾

이는 한국과 유엔의 안전과 위임명령이라는 원셋 기준이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 이후에도 충돌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엔이 ㉠을 양보한 1수준 게임 때와 달리 한국이 ㉡에 대한 한정적 역할을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일종의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였다. 결국, 한국군 공병부대는 UNAVEM III의 지시에 따라 앙골라 중부지역 우암보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우암보 남북의 지뢰가 산재한 파괴된 교량 8개를 조기에 복

50)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 pp. 302-305.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증언록, pp. 125-126.

구 재건하고 파병된 지 약 15개월만인 1996년 12월 23일 제3진을 끝으로 귀환하였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한국의 앙골라 PKO 공병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양면 게임이론의 원셋 개념을 기초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앙골라 파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 외교적 목적과 배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적용한 원셋은 안전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한국은 1수준 게임인 유엔과 잠정합의 과정에서 이미 국회 동의를 고려하여 ㉠ 파병부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비지뢰 제거작전 수행을 주장하며 ㉢ 비전투부대 파병을 양보받았다. 이를 통해 교량건설 공병부대 파병 논리로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둘째, 병력 공여국인 한국과 달리 유엔은 위임명령을 원셋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안전문제는 유엔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공여국의 요구는 수용하더라도 파병부대가 위임 명령 세 가지(㉠ 평화회복 및 국가통합 지원 ㉡ UNITA 수용소 설치지원 ㉢ 지뢰제거체계 구축) 모두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고 2수준 게임 이후까지 파병부대에 대한 임무부여를 통해 관철하였다.

셋째,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를 끝난 후 특정 주둔 위치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하였다. 유엔은 임무 단과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PKO 임무에 대한 통제 권한을 근거로 거부하였고 나아가 위임명령 ㉠, ㉡는 물론이고 한국이 불합의사를 밝힌 ㉢에 대해서도 부분적 참여를 형성시켰다.

넷째, 행위자의 역할 면에서 앙골라 파병정책 결정을 위해 한국은 외무부가, 유엔은 사무국이 협의했으나, 정책결정과 협의를 위해 윈셋 논리를 제공한 것은 국방부와 현지의 유엔 임무단이었다. 그리고 행정부(대통령)와 국회는 안전을 확보한 논리가 뒷받침된 잠정합의 결과를 토대로 큰 충돌 없이 2수준 게임을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유엔과 상충 등이 있었으나 반복과 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이로써 2장에서 제시했던 잠정 가설 “유엔이 한국에 최초 ㉢를 요청하자 한국은 파병은 수용하되 ㉣를 주장한다. 이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를 활용하여 ㉤의 확보를 추구한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국회 동의를 위한 2수준 게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며 국회 동의 후 후속 조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검증되었다. 다만, 유엔의 윈셋에서 융통성의 범위일 것으로 가정했고, 한국 정부도 협의를 기대했던 유엔의 윈셋 ㉡와 ㉢는 ㉠와 마찬가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임명령의 기준적 특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파병정책에 대한 한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 정부 부처별 경쟁과 협력, 절차를 준수하는 조직문화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정책결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유엔은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변경하지 않으려는(일관성 중시) 조직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회 동의로 파병이 결정되기 이전, 즉 1수준 게임인 잠정 합의 과정에서 부대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현지에서 임무수행은 유엔임무단의 권한 범위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행할 과업, 주둔 위치 등을 관철하면서 파병을 할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유엔과 협의하여 국회 동의안에도 포함하고 지령에도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파병정책을 준비하고 결정할 때 유엔임무단의 위임명령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위임명령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산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국익 차원에서 위임명령 수행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는 안전에 대한 파병부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예를 들면, 지뢰 제거 장비와 인력의 충분한 편성 등)을 강구하여 파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파병 결정의 정점에 있으나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국가이익과 파병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공여국인 한국은 정책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동의가 가능한 파병 논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유엔과 합의를 위해 윈셋을 적용한 모의 게임을 통해 미리 경합해 보고 확보할 것과 양보 및 수용할 사항을 도출, 유엔과 협의에서 상생(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20. 6. 26, 심사수정일 : 2020. 11. 10,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 한국, 유엔(UN), 앙골라, 평화유지활동(PKO), 파병정책,
윈셋(Win-set)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 안보와 유엔체제』 서울: 집문당, 2003.
<http://uci.or.kr/G701:B-0009321554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대한민국 공병부대 증
언록』, 2019.
_____, 『상륙수부대 파병사』, 2012.
<http://uci.or.kr/G901:A-0006439013>
-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서울: 오름, 2000.
<http://uci.or.kr/G701:B-00093274973>
-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서울: 선인, 2016.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595722>
- 박홍순·조한승·정우탁 편, 『유엔과 세계평화』, APCEIU, 2013.
- 육군본부, 『해외파병 40년사』, 2008.
-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서울: 박영사, 2008.
- 정은숙, 『국제질서의 변화와 유엔의 평화·안보 거버넌스』, 서울: 선인,
2019.
-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사(제9집: 1995년도사)』, 1997.
- Esref Aksu, *The United Nations, intra-state peacekeeping and
normative chan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http://uci.or.kr/G901:A-0006664551>
- George Wright, *The Destruction of a Natio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Angola Since 1945*, Lndon: Pluto Press,
1997.
-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ed, Addison Wesley
Longman, 1999.
- Haidi Willmot, Scott Sheeran, and Lisa Sharland, *Safety and*

Security Challenges, New York: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2015.

2. 논문

고성윤·부형욱, “신속 파병을 위한 시스템 발전방안: 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 『국방연구』 제53권 제3호, 2010, pp. 71-95.

<http://uci.or.kr/G704-001669.2010.53.3.004>

김열수, “UN 평화유지 활동의 부침: 구조적 원인과 행태적 원인,” 『국제정치논총』 제39집 제1호, 1999, pp. 435-454.

<http://uci.or.kr/G901:A-0001312824>

_____, “해외파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 『전략연구』 제13권 제1호, 2006, pp. 125-151.

<http://uci.or.kr/G901:A-0002178092>

김정두, “한국 군사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해외파병 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1.

<http://uci.or.kr/G701:B-00092965522>

김정기, “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제35집 제4권, 2019, pp. 73-104.

<https://doi.org/10.17331/kwp.2019.35.4.003>

나옹하, “양면게임 이론에 입각한 파병 정책 결정 연구: 이라크 파병 협상의 윈셋(win-set)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0집 제1권, 2014, pp. 29-49.

<https://doi.org/10.31066/KJMAS.2014.70.1.002>

박순향, “PKO-C34를 통해 본 한국 평화활동의 발전 방안,” 『전략연구』 제24권 제1호, 2017, pp. 145-178.

<http://uci.or.kr/G704-001467.2017.24.1.010>

_____, “유엔 평화활동 분석과 한국 평화활동의 방향,” 『군사』 제90호, 2014, pp. 181-219.

<https://doi.org/10.29212/mh.2014..90.181>

_____,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4호, 2019, pp. 39-71.

<https://doi.org/10.17331/kwp.2019.35.4.002>

유병선, “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전, 걸프전, PKO 파병 사례분석,”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2.

<http://uci.or.kr/G901:A-0005015006>

이상욱, “한국 해외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5.

<http://uci.or.kr/G901:A-0005946266>

이신화, “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양분화 고찰: 유엔 PKO vs. 다국적군 파병,” 『아세아연구』 제56권 제2호, 2013, pp. 188-225.

<http://uci.or.kr/G704-000745.2013.56.2.005>

_____,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 『OUGHTOPIA』 제34권 제1호, 2019, pp. 7-42.

<http://uci.or.kr/I410-ECN-0101-2019-306-000725533>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PO)의 국익 증진 효과,” 『국가전략』 제17권 제2호, 2011, pp. 33-68.

<http://uci.or.kr/G901:A-0002912415>

정도생,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6.

<http://uci.or.kr/G701:B-00092836124>

황진한·김건우, “21세기 한국군의 PKO 전략 연구: 군사력의 소프크 파워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68권 제3호, 2012, pp. 99-127.

<http://uci.or.kr/I410-ECN-0101-2018-039-001935477>

Kyudok Hong, “The Impact of NGOs on South Korea's Decision to Dispatch Troops to Iraq,”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12, No. 2, 2005, pp. 31-46.

<http://uci.or.kr/G704-000686.2005.12.2.006>

_____, “South Korea’ Future Strategies for Better Peace Op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No. 1, 2019, pp. 21-42.

<http://uci.or.kr/I410-ECN-0102-2019-300-001167397>

Jai Kwan Jung, “Mission Impossible? Negotiated Settlement, UN PKO, and Post-Civil War Democracy Building,”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1, 2017, pp. 151-173.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437552>

Lee Shinwha, “Does Helmet Color Matter?: Discrepancy in Korea'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8, No. 3, 2014, pp. 51-73.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27-460.

3. 1차 자료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 파견 관련 사료 I~III』, 1995.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군 공병 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1995. 7. 13.

_____,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군 공병 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계속),” 1995. 7. 14.

_____, “제176회 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1995. 7. 15.

앙골라 PKO 공병대대, 『PKO 업무지침서』, 1996.

외무부, “국무회의 의안처리전 제424호(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안),” 199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64*, September 15, 1993.

_____, *Resolution 976*, February 8, 1995.

4. 기타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6월 1일.

“Angolan Civil War,” <https://en.wikipedia.org> 검색일: 2020. 7. 20.

(Abstract)

A Study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Dispatch Policy of the ROK's PKO Forces to Angola

Kim, Jeong-ki

Republic of Korea(ROK) sent the first group of Engineer forces on October, 1995 as a contingent of the United Natio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UNAVEM III) for Peacekeeping Operation(PKO) to Angola. Which was initiated by requesting of the UN on February, 1995. Dispatching to Angola is a unique case because it was decided during the period of aftereffect from dispatch to Somalia. And it was not the same engineer unit as others, which was to repair bridges and reconstruct in the area Angola. These facts stimulate this paper to be begun. What made the dispatch to Angola possible? To answer that questions is the goal of this study.

The Win-sets conception of two-levels game theory was used to stud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unit's deployment and to investigate solution of discords between ROK and U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security issue was the main factor of win-sets for ROK to negotiate, whereas, the mandates for UN was the main one. With the win-sets, the process of decision to send a Engineer PKO unit had to follow two-levels game including the possible agreement between ROK and UN, and the final ratification of ROK's National Assembly. And the discords about for mission area and the post was also solved on the base of the win-sets of them as well.

Keywords : Republic of Korea(ROK), UN(United Nations), Angola, Peacekeeping Operation(PKO), Dispatch Policy, Win-sets

